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 5. 2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3년 4월 23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3년 4월 27일
- 다. 상정일자 : 제177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2013년 5월 2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가. 제안이유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개정에 따라 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점용료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도로법」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도로관리 행정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안 제3조 별표 1 제7호 “노점·자동판매기·상품 진열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중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으로, “노점·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에서 “노점”만을 토지가격에 0.02을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으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인하함.

(2) 안 제9조의2(과태료 부과·징수) 조항과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후에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한금액을 150만원으로 정하고자 함.

3.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기영)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한 별표 5 제2호 중 나목은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의 과태료 상한액이 200만원인데 반해, 다목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로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위반행위의 경중에 비해 과태료 상한선 책정이 형평에 맞지 않고, 서울시는 물론 타구와의 형평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나목의 과태료 상한금액을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상위법이나 다른 법규와의 관계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법 적용의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